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933

발의연월일: 2020. 11. 4.

발 의 자:송언석·정희용·구자근

박덕흠 • 홍석준 • 김용판

김정재 · 정진석 · 허은아

김기현 · 태영호 · 임이자

윤두현 · 김형동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를 대행하는 한국교통안전 공단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판매한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제작을 위한 자료 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함.

그런데 최근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전자제어장치(E CU) 불법튜닝 등이 성행함으로써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 조사(이하 "자동차안전단속"이라 함)에 자기인증 자동차의 사후관리 차원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고장진단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안전단속을 실시하는 한국교통안전공 단에 자동차검사 및 자동차종합검사뿐만 아니라 자동차안전단속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고장진단기를 활용하여 자동차안 전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 단). 법률 제 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3호의2 전단 중 "자동차검사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자동차검사,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제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자동	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차제작자등은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설 및 기술인력	
을 확보하고 다음 각 호의 조	
치(이하 이 조에서 "사후관리"	
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한국교통안전공단법」	3의2
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	
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	
단"이라 한다)에 정비매뉴얼,	
고장진단기 제작을 위한 자료	
등 제43조에 따른 <u>자동차검사</u>	<u>자동차검사, 제4</u>
및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	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
<u>종합검사</u> 에 필요한 자료의 무	사 및 제73조의2에 따른 자동
상 제공. 이 경우 무상으로	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제공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	조사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